

문화 예술인 산재적용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방송과 공연예술스텝을 중심으로

Study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Focus on Workers in Broadcasting and Performing Art

심희철*, 양정호**, 김현식***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국민대학교***

Hee-Chul Shim(simba3626@naver.com)*, Jeong-Ho Yang(reschool@hanmail.net)**,
Hern-Sik Kim(codesss@naver.com)***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부여된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의미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연구 목적 상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는 방송 보조출연자가 보조출연 60년 역사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송 없이 바로 산재보상 승인결정을 받았고, 반면에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 두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조출연자는 향후 산재보상적용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의 사례처럼, 보조출연자의 고용형태와 비슷하지만 근로자성 검토 보다는 산재보험 예술인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산재보상 적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도가 산재보상의 문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단역보조출연자부터 인지도 높은 연예인까지 예술인은 그 개념과 고용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하다. 이는 그 만큼 예술인이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 넣어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은 산재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 중심어 : | 산재보상 | 문화예술인 | 보조출연자 | 근로자 요건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aning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This study explains by giving specific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about broadcasting extra who is permitt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ithout filing a suit. Whereas, The second case is about musical stage crew who is not permitted to obtain compensation for accident during work. The reason why he could not receive compensation is not because he is regarded as worker, but because he is regarded as individual businessman.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could be a double-edged sword for workers through two cases. Firstly, Broadcasting extras could become much easier to receive workers' compensation according to precedent. Secondly, It is more difficult to get the workers' compensation by the reason of not applying for workers' compensation admission like the second case, even though the second case of forms of employment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In other words, New compensation development could generate another obstacles to enter compensation systems.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should be operated with covering artists' compensation case by case.

■ keyword : | Workers'Compensation | Worker Requirement | Stage Crew | Artists |

접수일자 : 2013년 12월 23일
수정일자 : 2014년 02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2월 20일
교신저자 : 김현식, e-mail : codesss@naver.com

I. 서론-문제제기

요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트렌드가 ‘아웃도어’ 프로그램이다. 그 이전에는 실내에 앉아서 과거의 에피소드를 내보이는 토크 쇼 위주의 ‘인 도어(In door)’ 프로그램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리얼리티를 표방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출연자들이 인공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실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실제 활동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내는 이른바 ‘아웃도어(Out door)’ 프로그램이 붐이다. 이전에도 방송 출연자들이 나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인기를 누렸던 ‘출발 드림팀’이다. 야외 공간이라도 일정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리얼리티가 확보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시청률의 견인차역할을 하다 보니 각 방송사에서는 방송 예능인이나 출연자들의 더욱 리얼한 체험을 부각시키려 한다. 특히 스포츠 활동은 전문가수준을 요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에 예전에 비해 출연자들의 부상이 잇달아 발생하며 오히려 그 부상을 화면에 담아 리얼리티의 강도를 더 높이려는 효과에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실제로 개그맨 이봉원은 MBC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촬영 중 안전 타박상을 입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MBC 추석특집 ‘아이돌 육상·양궁·풋살 선수권대회’ 녹화 현장에서는 그룹 빅스의 멤버 레오가 풋살 경기 도중 발목을 다쳤다. KBS ‘출발! 드림팀’, SBS ‘정글의 법칙’ 등도 출연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로 유명한 프로그램이다[1].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은 출연자들이 부상을 입게 됨으로써 출연자와 스텝의 부상에 대한 산재보상이 주목되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KBS·MBC 등 지상파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한해 1년 단위로 1,000~2,000만원 정도를 들여 ‘단체 상해보험’을 든다. SBS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프로그램의 보험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예능의 경우, 타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1년 단위의

1,000만원대 단체 상해보험을 적용한다. 드라마의 경우 촬영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단기 보험을 든다[2]. 그나마 인지도 높은 프로그램이나 출연자들의 부상의 경우 보상구제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문제는 방송국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직접 받지 않고 간접 고용된 방송 출연자들의 산재보상이다.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어 산재 적용의 혜택이 넓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매체를 통해서나 산재승인 과정에서 주로 방송제작에 참여한 보조출연자 사례만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 자칫 다른 영역 예컨대 공연과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산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의 배제를 낳을 수 있다. 문화예술 전 영역에 경쟁과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산재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미비하다.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안전망에 관심을 가질 시기인 것이다.

본 연구는 근래 문화예술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재 보상에 대한 현황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주목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방송예술인에 비해 공연 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되지 않는 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연구 방법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승인과 불승인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사례연구를 사용한 이유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보상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예술인에 대한 산재적용확대 시점에 ①방송보조출연자에 대한 관례와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문화 예술인들의 향후 산재보상의 적용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해 보조 스텝들이 산재보상을 원활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훈석·전병준(2012)은 예술인 중 방송연예인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같은 정신질환 요인으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3]도 있지만, 예술인의 산재보상영역은 일반 근로자의 산재승인 영역과 동일한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정신질환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II. 사례를 통한 예술인 산재보상적용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시행 '12.11.18.)됨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이 마련되었다. 최정민·배관표·최성락(2013)은 예술인복지법의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시나리오 작가인 한 예술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책의 장이 열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존재하였기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계부처들의 반대 주장들이 대부분 수용되어 예술인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빠지게 됐다.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 등이 제도화되지 못하였으며 상정적인 조항과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내용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다[4]. 그러한 결과, 예술인에 대한 4대보험 중 예술인복지법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조항에는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다. 예술인에 대한 제도적인 산재보상이 마련되기 이전에 소위 엑스트라 같은 보조출연자들은 일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상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개별적인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2006년~2007년 방송)'은 보조출연자 산업재해 역사의 전환점이 된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보조출연자 김아무개(34)가 이 시트콤 촬영장에서 부상당한 사례에 대해 첫 산재 인정 판결[5]을 내리며 보조출연자의 노동자성 또한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 이후에 MBC 드라마 '선덕여왕(2009년)' 보조출연자의 산재에 대한 법원[6]의 판단도 같았다[7]. 이러한 법원 판결 사례에서 보조출연자들의 고용 성격이 근로자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례적으로 방송 보조출연자가 소송 없이 산재보상 승인을 받은 사례와 무대장치 기술자의 산재보상 불승인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 산재보상 확대적용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방송예술노동자사례(박희석, KBS 드라마'각시탈'보조출연자)

박희석은 2012년 4월 18일 경남 합천의 각시탈 촬영현장으로 가다가 버스 전복사고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이 5월 15일 산업재해를 신청한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행정법원(2008년), 서울고등법원(2009년)의 두 차례에 걸친 '보조출연자는 근로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조출연자는 개인사업자'라며 보조출연자의 산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4개월여의 심사 끝에 '승인'결정을 내렸다. 보조출연 60년 역사상 소송 없이 곧바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은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며, '보조출연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행정해석이 바뀐 최초 사례다[8].

먼저 박희석 사례에서 개인 소송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종전에 근로자성이 부인되었던 부분에서 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보게 된 점 때문이었다. 그 과정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1.1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인정근거

박희석 사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판단근거에 대해 정리한 지침[9]을 내렸다. 그 내용은 그 간의 행정법원에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근거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①업무 내용의 결정권, ②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③작업도구의 소유, ④연기력, ⑤보수의 성격, ⑥전속성 여부 등에서 개인사업자로 보기에 보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개인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종속[10]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업무 내용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며 출연료도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받는 등 개인사업자로 보기에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노무 제공의 연속적인 전속성 면에서는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하고 출연할 촬영장소를 선택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근로형태가 일용 근로자와 유사한 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1.2 향후 방송예술보조출연자의 산재인정

박희석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제는 보조출연자가 무조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보조출연자의 업무상 재해여부에 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도 보조출연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업무지침 및 방송

- 영화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적용 실무에 따라 그 기준이 마련된 것이며 이전의 기준보다는 그 산재 인정의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 즉, 기존의 행정해석에서 보조출연자는 하나의 특정 기획사 등에 소속하지 않고 출연섭외에 따라 임의의 선택이 가능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 판례는, 보조출연자가 소속관계는 없어도 출연섭외에 응한 이후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판례의 판결 기준에 따라 향후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2. 공연예술노동자산재사례(임유정, 공연 무대 크루)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대형 공연장에서 무대 전환을 담당하는 스텝 임유정의 머리 위로 10미터 높이에 설치됐던 15kg짜리 금속 덩어리가 떨어졌다. 임유정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전두엽의 일부를 잃었고 임씨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을 쓸 수 없어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11]. 임유정은 앞에 살펴 본 박희석과는 대조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1.1 공연무대 크루의 근로자성 인정근거

‘무대 크루’란 뮤지컬 공연에서 무대감독과 조감독 밑에서 공연진행에 대한 전반의 일을 담당하는 무대 관리요원을 말하며 임유정의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12]의 이유는, 프로듀서/제작사와 맺은 무대크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로자라기보다는 프리랜서로 간주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박희석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러한 계약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

시간과 장소 및 진속성 등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서의 성격 상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이다[13].

1.2 산업재해 불승인의 의미

뮤지컬, 영화나 방송 분야의 보조 출연자들은 고 박희석의 결정의 영향으로 산업재해의 보상을 받기가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2012년 11월 18일 이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업무를 시작했다. 그 예술인 기준에 임유정과 같은 예술 창작 및 실연 활동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술 분야가 있는데, 임유정의 사고시점은 2012년 12월 15일로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산재보상을 위하여 임의가입(본인의 가입 의사에 따라) 신청 제도가 생겼으나 임유정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임유정의 산재보상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산업재해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의무를 예술인 산재가입 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그 의무가 퇴색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오히려 영화

- 방송 분야의 보조출연자 중에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출연자도 있으나 방송출연자라는 타이틀만으로 산업재해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문화 예술인 분야에서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일 것인데, 산재보험제도는 이런 점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 두 가지 사례의 비교 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예술인 산재적용 사례분석 요약

방송(보조)출연자	구분(예술인)	공연무대기술자
일용직 근로자	신분	중소기업사업주
당연적용	효력	임의가입(접수일 다음 날)
개별 구체적 판단	판단	임의가입 신청여부

근로복지공단의 고유업무인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방송보조출연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속성을 보유하고었다고 해석하였고 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적용받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 방송보조출연자와 유사한 직종의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반면에, 임유정 씨와 같은 예술인들은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사업주의 신분이 되어 임의가입형태로 산재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산재보상의 수급권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임유정씨와 같은 문화 예술인들은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없이 사업주로 간주하게 되어 산재보상에 대한 적용의 여지를 법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III. 문화예술인 산재보상적용 제도와 그 한계

1. 문화예술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호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제7조에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원래 ‘예술인복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전업 예술작가와 단속적인 고용 형태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에서 가입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14] 임시 고용직 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었다[15].

실제로 문화예술인의 일과 관련한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년간 경험한 업무상 사고(상해)의 내용은 ‘넘어짐 사고’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부딪힘 사고’(23.8%), ‘떨어지는 사고’(20.2%), ‘신체반응, 과도한 힘 동작으로 인한 사고’(15.5%) 등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상해 종류로는 타박상(34.6%), 골절·부러짐(18.5%) 등이 높게 나타났다. 다치는 신체 부위는 어깨(17.3%), 다리(17.3%), 허리(11.1%) 등이었으며, 치료비를 지불하는 주체는 ‘본인 비용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58.0%였고 그 다음으로는 ‘소속회사에서 비용지원’(23.5%), ‘건강보험처리’(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6].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본인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비중이 많이 차지했다는 점과 일을 하다가 다쳤

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는 사례도 비중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예 처음부터 예술인이라고 (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와도 통할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방송영화 보조출연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근로자라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것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 문화예술인의 산재적용절차

2012년 11월 18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가입대상 예술인[17]이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보험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18]. 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신청일 현재 보수 목적의 예술활동 계약서를 첨부 후 공단에 제출한다. ② 제출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예술활동 증명 및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의 예술활동 증명확인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③ 보험가입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를 승인한다. 이 때 예술인 본인이 가입신청 접수를 하는 대신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료를 내고, 가입신청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④ 가입신청을 할 때 예술인은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해야 한다[19].

표 2. 2012년 중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	1,099,200	36,640	6	2,110,000	70,333
2	1,350,000	45,000	7	2,310,000	77,000
3	1,540,000	51,333	8	3,198,110	106,603
4	1,730,000	57,666	9	4,086,220	136,207
5	1,920,000	64,000	10	4,974,330	165,811

월 보험료는 선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보험요율은 예술활동 유형별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원

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은 산재법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술인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이지만,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3. 문화예술인 산재보험확대제도의 문제점

확대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제도가 가진 미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재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 규정에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다면 앞서 제시한 무대 전환수였던 임유정의 사례와 같이, 문화예술인을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즉, 중소기업사업주에 규정해 버림으로써 향후 고용형태가 다양한 예술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판단 또는 개별판단의 여지를 막는 셈이 되었다. 예를 들어 박희석 이전에는 보조 출연자 역시 전형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보상신청 조차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특별한 고용형태의 특이 변수가 없는 한 보조 출연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한국노동연구원(2012)이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내용 가운데, 연극분야의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사상 지위의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공제를 하면서 고용근로계약을 하는 사람, 직급이 대표이면서 팀별 계약을 하는 사람, 근로자 및 사업주라고 볼 수 없는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일 경우에도 상시고용형 프리랜서와 프로젝트별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자동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형 프리랜서로 나뉘었다[20]. 이렇듯 예술 분야의 고용형태는 다양하며 그 양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르게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이 유연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2) 예술인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예술인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는 사업장의 가입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 상시적으로 누군가에게 일을 주어야 하는 예술관련 사업장에게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셈

이다. 즉 예술노동을 할 사람이 항상 필요한 업체는 개별인력이 아니라 노동자 군(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술 분야의 고용형태는 다양하며 특히 비정규직도 세분화된다. 다른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선·김건용(2011)[21]은 방송인력의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의 인용에서 비정규직이 직·간접 고용으로 크게 나뉘고 그 고용형태에 따라 하위에 바우처, 임시직, 파견, 용역 그리고 특수고용형태로 나뉜다고 하였다. 특수고용형태의 경우 산재법에서는 보험실계사, 학습지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골프장장기보조원,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특수직종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수형태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는 업무종사자를 말한다[22]. 이때 특수형태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와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맺고 일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 특히 프리랜서와 가까운 직업군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분류원칙[23] 중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을 보는데, 특히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산재보험의 재해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가입대상 예술인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예술인의 활동 가운데 기술지원 분야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술지원의 직업그룹에는 기획, 기술, 그 외 예술 스텝들이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중소기업사업주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사업주의 가입의무를 봉쇄해 버렸다.

IV. 결론-요약 및 개선과제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건수는 252건이다[24].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되어 아직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문화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방식인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형태는 임의가입신청제도로 문화 예술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개별 구체적 판단을 배제해 버린 결과를 의미한다. 즉,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용형태가 다양한 예술분야의 경우 개별 건으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중소기업사업주라는 범주에 국한시킴으로써 산재보상의 적용범위를 한정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는 병행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가입방식은 예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예술인 개인에게 주어진 자기책임방식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와는 별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택배·퀵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용형태의 전속성 및 사업의 형태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로 나누어져 있어 선택의 폭이 예술인들보다 넓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자 산재특례적용방식은 예술인 분야의 산재보험 가입과정에서 예술인 직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용하는 사업장(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일하는 이들은 개인차원이지만 항상 예술노동에 관한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자의 상황은 그들에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가 저야할 의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역시 택배·퀵서비스업 종사자처럼 고용형태 중 사업장 전속성 여부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가입의무를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특수형태근로자 산재특례적용방식을 원용한다고 해서 모든 개선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일반적인 자영업자와는 달리 자기 점포나 작업장 없이 개인으로 기업과 노무공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다. 사업자지만 근로자 버금가게 높은 종속성을 보이는 개인들이다. 즉, 법적으로는 근로 제공방법과 시간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로 규정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암묵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다. 실제 노동과정은 상당부분 종속노동관계(사용종속관계)의 굴레에 묶여 있지만, 법률적 지위로 인해 노동법의 보호에서는 배제된 이들이다[25]. 즉, 여기에서 법률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화 예술인의 특수형태근로자 산재특례적용방식의 원용방법도 특수형태근로자 산재특례적용방식의 한계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화 예술인의 산재적용확대방식을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형태로 한 것은, 사업주이지만 자진해서 가입하면 근로자처럼 산재보상을 해 주겠다는 자율선택형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지는 제한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이 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에 고무적인 판례도 있었지만 아직은 개별사안에 대한 심사가 더 일반적이다. 특히 걸으며 드러나지 않는 문화예술공연 기술지원스텝의 경우 산재가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산재 불승인되는 제도적 모순도 현실이다. 불행한 사고 이전에 산재보험확대에 제도적인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서울신문, 안전보다 시청률 부상 권하는 예능, 김소라 기자, 2013년 9월 9일, 2013.
- [2] 일간스포츠, 연예인 산재처리의 비밀. 보험 보상도 인기에 따라, 원호연 기자, 2013년 8월 16일, 2013.

- [3] 이훈석, 전병준, “방송연예인의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2012.
- [4]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250, 2013.
- [5] 서울행정법원 2008.11.20.선고2007구단15424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6] 서울행정법원 2010.12.28.선고2010구단7966판결.
- [7] 한겨레, 엑스트라 산재, 2008년에야 첫 인정...법원 “근로자 해당”, 박유리 기자, 2013년 10월 2일, 2013.
- [8] 미디어스, 각시탈 산재 인정, 보조출연 60년 역사 켜져 될까?, 박상아 기자, 2012년 9월 17일, 2012.
- [9] 고용노동부, 보조출연자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산재보험 업무처리 지침 시달, 산재보상정책과, 2012년 9월 28일, 2012.
- [10]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판단 기준과 사례*, p. 7, 2012(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의 근로자성 해석기준은 대법원판결을 참조하여 종속성 판단을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함).
- [11] 서울신문, 어느 뮤지컬 스태프의 비극, 김민석 기자, 2013년 9월 18일, 2013.
- [12] 임유정씨는 근로복지공단 원처분지사에서 불승인을 받았고 이에 이의제기인 심사청구에서도 각각 결정을 받았다.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13] 근로복지공단(2013 심사결정 제2619호), 심사결정서.
- [14]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료보험)은 97.8%, 국민연금 66.7%, 산재보험은 27.9%, 고용보험은 30.5%로 2009년 실태조사와 비슷한 양상이다.(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
- [15] 김휘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11호, 2013.
- [16] 조흠학, *문화예술인의 산재해 관련 실태*, 안전보건 연구동향, 여름호, 2013.
- [17]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사업주) 제1항 제2호 마목 신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18] 근로복지공단,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실무*, 2012.
- [19] 2012년 중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 [20]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12.
- [21] 김병선, 김건용,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고용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인력 이동 및 비정규직 비율 변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2호, pp.34-35, 2011.
- [22]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 해설*, 2012.
- [23] 고용노동부,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 2013.
- [24] 근로복지공단 자료(2013년 9월 기준)
- [25] 이병훈,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특수 고용노동자이야기)*, 창비, p.264, 2013.

저 자 소 개

심 희 철(Hee-Chul Shim)

정회원



▪ 1999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
학과 교수

<관심분야> : 케이 팝 경영, 한류, 방송포맷산업

양 정 호(Jeong-Ho Y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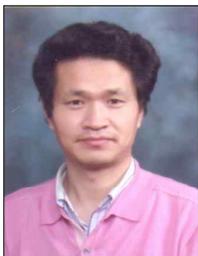


▪ 2002년 1월 ~ 현재 : 근로복지
공단 가입지원부

<관심분야> : 예술인 산재보험, 산재보험제도 연구

김 현 식(Hern-Sik Kim)

정회원



▪ 2013년 3월 ~ 현재 : 국민대 강사

<관심분야> : 대중문화, 문화예술정책